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직업교육법안

검 토 보 고

〈직업교육법안〉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5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적검토	4
(1) 제정안의 내용	4
(2) 제정안의 구성	4
(3) 현행 직업교육 관련 법안의 특징	5
가. 다수의 법안 혼재	5
나. 교육과 훈련의 구분 모호	6
다. 복수의 소관부처	7
라. 단계별 직업교육에 대한 규정 부재	8
마. 용어의 혼재	8
(4) 제정안의 취지	9

가.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는 기본법 마련	9
나. 기초직업교육 및 단계별 직업교육 구분	10
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구분	10
(5) 별도 법안의 필요성 검토	11
2. 용어 정의(안 제2조)	14
(1) 직업교육기관 및 교원	17
(2) 학생	19
(3) 현장실습	1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21
4.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23
5.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심의(안 제7조)	26
6. 국가직업교육센터(안 제8조)	28
7. 현장실습 지원 등(안 제10조)	30
8. 직업교육교원(안 제11조)	33
9. 산학연 협력(안 제12조)	35
10.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안 제13조)	37
11. 고등단계 직업교육과정(안 제19조)	39
12. 지도 및 지원(안 제25조)	41
※참고 1. 직업교육법 제정(안) 법령 및 기본계획 등 개념도	43
참고 2. 해외 직업교육법 입법례(대만, 독일)	4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국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1.
3. 회부연월일 : 2024. 1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기술 등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환경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또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및 직무도 급변하여 2020년부터 5년 동안 8,500만 개의 일자리는 자동화 등으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직업교육은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에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됨.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의 패러다임이 요구됨.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직업능력 계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산업계의 수요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합협력위원회에서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까지).
- 다. 직업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산학연 협력,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직업교육 단계를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마. 초·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기초직업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등과 관련한 사항과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은 최대 1년 이내의 학점·학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평생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직업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의 정의를 규정하고, 직업교육 추진체계로서 교육부장관이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직업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운영 및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등을 하도록 하고,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별로 직업교육과정에 대해 규정함.

(2) 제정안의 구성

제정안은 본칙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직업교육법안	
□ 본칙(2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직업교육 이념)	
제2장 직업교육 추진체계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직업교육에 관한 심의사항)
제3장 직업교육 진흥	
제8조(국가직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산학연 협력)
제9조(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제13조(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제10조(현장실습 지원 등)	제14조(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제11조(직업교육교원)	
제4장 단계별 직업교육	
제1절 초·중등단계의 직업교육	
제15조(교육과정의 종류)	제17조(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
제16조(교육과정 운영 등)	
제2절 고등단계의 직업교육	
제18조(교육과정)	제20조(단기 전문직업교육과정)
제19조(평가 및 인증)	
제3절 평생단계의 직업교육	
제21조(적용대상)	제23조(평가 및 인증)
제22조(교육과정)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지도 및 지원)
☐ 부칙	

(3) 현행 직업교육 관련 법안의 특징

가. 다수의 법안 혼재

현재 직업교육 관련된 법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다수가 존재하고 있음. 각각의 법안은 직업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분

야를 규정하고자 하지만, 동 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으로서 선언적 의미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존 직업교육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훈련범위	직업교육 ○(일부) 직업훈련 ×	직업교육 ○ 직업훈련 ○	직업교육 × 직업훈련 ○
적용기관	교육기관 ○ 훈련기관 ×	교육기관 ○ 훈련기관 ○	교육기관 × 훈련기관 ○
지원대상	중등단계 × 고등단계 ○ 평생단계 ×	중등단계 ○ 고등단계 × 평생단계 ×	중등단계 × 고등단계 ○ 평생단계 ○
소관부처 및 부서	교육부(산학협력취 창업지원과)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나. 교육과 훈련의 구분 모호

앞서 언급된 직업교육 관련 법안들은 “직업교육훈련”, “산업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교육”과 “훈련”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거나 둘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 다만, 교육부 소관 법안에서는 “교육” 용어가,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에서는 “훈련” 용어가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임.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199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現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간한 「직업교육훈련 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직업훈련은 넓은 의미에서 직업교육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좀더 좁은 의미의 직업교육 또는 특정한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반복하여 숙달시키는 교육으로 제한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과 훈련의 개념을 통합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라 하기도 한다.

한편, 제정안은 제명이 「직업교육법안」으로서 “훈련”을 제외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업에 대한 소양을 습득시키고 직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복수의 소관부처

직업교육 또는 훈련 관련 법안들의 소관 부처는 다음과 같음.

<직업교육 관련 법안 소관 부처>

법안명	소관 부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정책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평생교육법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즉 현재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소관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라. 단계별 직업교육에 대한 규정 부재

현재의 직업교육 또는 훈련 관련 법안들은 각각 직업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현장실습, 산학협력, 기능대학 등 세부적인 분야들에 대해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며, 용어 정의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기본법에 가까워 보이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도 현장실습, 교육훈련 위탁, 훈련기관 평가 등을 위주로 규정을 하고 있을 뿐, 단계별 직업교육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마. 용어의 혼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다른 직업교육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용어를 정의¹⁾를 하고 있기는 하나, 많은 직업교육 또는 훈련 관련 법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안들은 각각의 법안에서 직업교육훈련, 기관, 교원 등에 대해 제각각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어 일관성 있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현장실습”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이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고등교육법」²⁾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³⁾에서는 “현장실습”에 대한 별도의 정의도 하지 않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용어를 준용하지도 않고 있음.

(4) 제정안의 취지

가.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는 기본법 마련

현재 파편화된 직업교육 관련 법안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본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규율 범위를 “직업교육”으로 한정짓고 있으며, 직업 교육 추진체계도 교육부장관이 주체가 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직업훈련”과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는 「직업 교육훈련 대사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나, 제정안의 의도가 직업교육에 한정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고자 한다면, 직업훈련과 관할이 중첩될 여지가 있는 현장실습은 포괄적 정의를 제정안을 통해 정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현행과 같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나. 기초직업교육 및 단계별 직업교육 구분

제정안은 기존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았던 기초직업교육 및 단계별 직업교육을 규율함으로써 해당 분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기존 직업교육 관련 법안들은 제정안의 전문직업교육⁴⁾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계별 직업교육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바, 제정안은 이러한 법령

4) 안 제2조제1항나목, 전문직업교육 ;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취업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상위 수준의 직업교육

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구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같이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안들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무적 인식도 양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직업교육훈련 대사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직업훈련은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에 포함될 여지도 있는 바, 지금까지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임.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나누어 관장하고 있는 현실이 부처간 업무의 중복과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제정안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지식·기술·태도에 대한 교육을 직업교육으로 규정짓고,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훈련으로 규정짓고자 함.

(5) 별도 법안의 필요성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직업교육 또는 훈련과 관련한 여러 법

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을 추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산재해 있는 직업교육 또는 훈련 관련 법률 규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직업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기존 법률과의 중복 또는 체계 적합성⁵⁾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과 업무분장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과 중복 우려가 있는 기존 법률들의 조항에 대한 검토와 업무 중복을 우려하는 타 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제정안에 대해 「직업교육법」 제정을 통해 정규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이 기초직업교육부터 전문직업교육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10조(평생교육), 제20조(유아교육) 등 「교육기본법」을 기초로 기본법적 성격의 하위법 체계가 구축된 반면, 「헌법」(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과 「교육기본법」 제21조(직업교육)에 근거한 하위 법령이 미제정된 상황이고,⁶⁾ 학교 현장의 「직업교육법」 제정 요구가 매우 크다는 입장임.

5) 이미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안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점에서 기존 법령에 대한 정비 없이 추가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의 중복,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이하 조문별 검토에서도 다루겠지만, 실제로 각 조문의 내용이 기존 직업교육 관련 법안과 중복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참고 1. 직업교육법 제정(안) 법령 및 기본계획 등 구조·개념도

해외 다른 나라도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직업교육법을 제정·운용
중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임.⁷⁾

7) 참고 2. 해외 직업교육법 입법례(대만, 독일)

2.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은 제1조에서 제정 목적과 함께, 안 제2조는 “직업교육”, “직업교육기관” 등 직업교육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업에 대한 소양을 습득시키고 직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기초직업교육: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직업기초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본적 수준의 직업교육

나. 전문직업교육: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취업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상위 수준의 직업교육

2. “직업교육기관”이란 제1호나목의 전문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3. “직업교육교원”이란 제2호의 직업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의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을 말한다.

4.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수업을 말한다.

제정안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 및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어, 기존 직업교육 관련 법률과 차별성을 두고 있음.

<기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조문>

구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자	학생·근로자 등	주로 근로자 및 구직자	대학(고등교육기관), 산업체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고용안정성 강화	직업훈련 중심으로 직업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개발 촉진·지원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조문	제1조 (목적)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는 직업교육, 직업교육기관, 직업교육교원, 현장실습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이들 용어는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유사

한 면이 있음.8)

<직업교육 관련 법률의 용어 정의>

구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 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고용부장관 승인)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고용부장관 승인) - 기능대학: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 교원	- 직업교육훈련교원: - 중등학교 내 전문교과 담당 - 훈련기관의 훈련교사	- 교원: - 기능대학의 교원(산학겸임, 초빙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기관의 훈련교사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해당 규정 없음)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제43조(교원 등의 종별·자격 및 정원)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1) 직업교육기관 및 교원

제정안은 “직업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인증을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도 제정안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거쳐 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같은 평생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기관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임.

한편, 제정안은 직업교육교원을 같은 조 제2호의 직업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의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직업교육교원은 별도의 자격 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11조), 이는 엄격한 자격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직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는 명칭이 “교원”으로 정의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상의 교원⁹⁾과는 다른 교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일 여

9)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

지가 있음. 교원이라는 용어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직업교육교원이 새로운 교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⁰⁾

따라서 교원의 종류와 자격요건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교육교원의 법적 성격 및 지위에 대해 교육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 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제정안의 정의 규정이 기존법령에 산재된 직업교육 관련 주요 사항인 직업교육기관, 직업교육교원, 현장실습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히 각 법에서 교원의 자격요건¹¹⁾과 교육내용이 상이하여, 초·중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원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10) 예를 들어 해당 정의를 “제2호의 직업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의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2) 학생

제정안은 직업교육의 대상자를 “학생”으로 통칭하며, 별다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¹²⁾.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¹³⁾의 평생교육기관 중 안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기관도 직업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안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학교 형태를 갖추지 않은 평생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도 학생으로 불리게 될 것으로 보임. 물론 무엇을 배우는 사람을 학생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법률용어로서의 학생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각종 규정의 적용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¹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교육의 대상자로서 학생이 아닌 직업교육훈련생을 정의하고 있음.

(3) 현장실습

제정안은 “현장실습”을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향후 진로와 관

1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도 학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각급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사람을 학생으로 칭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의 규정에서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1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14) 예를 들면 「평생교육법」은 학생 이외의 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수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현장에서 받아야 할 교육 내용과 과정 그리고 산학협력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제2조(정의)와 제7조(현장실습)¹⁵⁾에서 현장실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률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장실습 정의 규정 비교>

제정안 제2조제4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 현장실습 ”이란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u>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수업</u> 을 말한다.	“ 현장실습 ”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u>교육훈련과정</u> 을 말한다.

- 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직업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직업교육 사업장 등의 설치자 직업교육 관련 정책 적극 참여 권장, 산업체를 포함한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직업교육관련 조사 분석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가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체를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직업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규정은 다른 직업교육 관련 법령에도 다수 존재함. 다만, 그 지원 규정이 각 법의 취지에 맞춰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직업교육 관련 법안 지원 관련 규정>

제명	지원 관련 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을 촉진하고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제정안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이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¹⁶⁾, 직업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입장임.

16)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중등단계 전문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어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다루지만,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책이 주된 내용으로, 초·중등 및 평생교육 기관과 산업체 간 직업교육 연계 지원이 부족함.

4.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의견수렴, 자료제출 요청,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규정함.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국가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4. 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평가
5. 직업교육기관 간, 산업체와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기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 및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장,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교육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직업교육 관련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음.

<직업교육 관련 기본계획>

제명	지원 관련 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정안이 직업교육훈련이 아닌 직업교육에 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기본계획 또한 그러한 방향에서 도입되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에서 이미 직업교육 관련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정안의 기본계획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정안의 기본계획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중복

되는 여지가 많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본계획 중 산업교육에 관한 부분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여겨짐.

비록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은 1999년 제1차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이후 별도로 수립된 바 없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훈련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활동에 한정되어 있는 등 개별 정책대상별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조항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본계획 중 산업교육에 관한 부분과의 관계 조정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직업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존 직업교육 관련 법령의 기본계획의 한계¹⁷⁾를 넘어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전반을 통합하는 종합적·장기적인 직업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하므로 동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예비)근로자 및 실업자 대상의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규 교육체계 내 직업교육을 포괄하지 못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1999년 제1차 직업훈련 기본계획 이후 별도로 수립된 바가 없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성 부족 및 정책적 일관성이 미흡하며,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규 교육체계 내 직업교육을 포함한 일관된 직업교육 정책 수립이 어려움.

5. 직업교육에 관한 심의사항(안 제7조)

제정안은 직업교육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 등의 심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직업교육에 관한 심의사항) 직업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직업교육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¹⁸⁾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직업교육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지 않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른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협력위원회¹⁹⁾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이는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교육의 정의²⁰⁾가 제정안의 직업교육과 다르고 국가산학협력위원회는 산업교육 외에도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도 심의함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심의의 전문성을 저해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실행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교육이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산학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 및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국가직업교육센터(안 제8조)

제정안은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8조(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의 연구·개발, 직업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 추진, 교원역량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업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국가직업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이 직업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추진 및 지원 등을 위해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 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업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국가직업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전 부처 차원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교육부는 동 조항에 대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는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며, 직업교육 정책연구, 산업맞춤형 직업교육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으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현장실습 지원 등(안 제10조)

제정안은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체는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0조(현장실습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체는 전문직업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은 산업체가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해석됨.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를 모든 산업체가 아닌 현장실습산업체로 별도로 규정하고, 동 산업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²¹⁾

그리고 제정안의 현장실습 지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

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²²⁾등 기존 법령의 지원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보이므로, 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집행 상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현장실습은 주로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 참여하지만, 그 활동이 교육기관이 아닌 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양자의 특징을 모두 갖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했을 때, 제정안에서 현장실습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직업훈련과의 연계방안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동 조항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실습생 및 지도 교원의 안전 확보 등을 포함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등에 현장실습 관련 규정이 존재하나,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일관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제정안에서 현장실습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세부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직업교육법 대비 기존 법령 내용 비교>

구 분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지원 규정
고등교육법	대학과 산업체 간 실습 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 및 직업교육기관의 산업체 연계 실습 운영 규정
대학생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규정	학점 인정 및 대학-실습기관 협약 방식

8. 직업교육교원(안 제11조)

제정안은 직업교육교원에 대한 내용 및 직업교육교원에 대한 직업교육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직업교육교원) ① 직업교육기관은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 경력을 갖춘 직업교육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교원이 연수를 통하여 전문성 및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직업교육교원의 채용 및 제2항의 교원연수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²³⁾에서도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제정안의 동 조항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보임.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은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연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교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므로, 동 제정안에서 직업교육교원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2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규정하여, 기존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²⁴⁾에서도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교원 등을 정의하고 있는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지원이 동 제정안의 지원과 중복되는 면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산학연 협력(안 제12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가 산학연 협력에 대해 성실히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산학연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12조(산학연 협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산업체 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 및 지식·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체 수요 등을 반영한 전문직업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직자의 평생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외의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역량 강화 및 현장성 높은 전문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위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협력이 서로 힘을 합하여 자발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민간기관인 산업체에게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보임. 안 제10조(현장실습 지원 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항에서도 모든 산업체가 아닌 산학연협력 산업체 등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제1항은 산학연협력에서 각 주체들이 협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

정한 “산학연협력”의 내용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 보임. 또한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될 여지가 있음.²⁵⁾ 이를 고려했을 때, 두 법에서 산학연협력사항 및 산학연협력에 대한 지원을 각각 규정하기보다는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제정안에 산학연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교육부는 현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기초직업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에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안 제13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13조(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육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현장실습 지원 등) 및 안 제12조(산학연 협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항에서도 모든 산업체가 아닌 해당 지역 특화 산업 등을 고려하여 산업체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3항은 지역산업 육성과 직업교육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²⁶⁾에 따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중복될 여지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군·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가 있어 보임. 또한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동 조항에 대하여 현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기관, 산업체 등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의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 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고등단계 직업교육과정(안 제18조)

제정안은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8조(교육과정) ①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능력 중심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②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정은 중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 운영 시, 현장실습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을 따른다.

제3항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 운영 시, 현장실습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두 조문을 살펴보면, 이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대한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산업교육기관은 그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안 제18조제3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현장실습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사항을 중복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 바 안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법률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12. 지도 및 지원(안 제25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을 지도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5조(지도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기관을 지도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동 조항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 제4조는 국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11조는 직업교육교원의 채용 및 연수를, 안 제13조는 지역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육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12조에서도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조항들을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해당 조항은 제5장 보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제상 보칙규정이란 법률의 실체규정과 관련되는 절차적인 사항, 그 밖에 부수적인 사항 등 실체규정 부분에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함.²⁷⁾ 그러나 동 조항은 조성적 행정지도인 일

27)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620, 2024.5., 국회 법제실.

“일반적으로 보칙규정의 내용으로는 ①손실보상·손해배상, ②행정심판·행정소송, ③조정·중재,

종의 급부 행정행위로서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5장보다는 제3장 직업교육 진흥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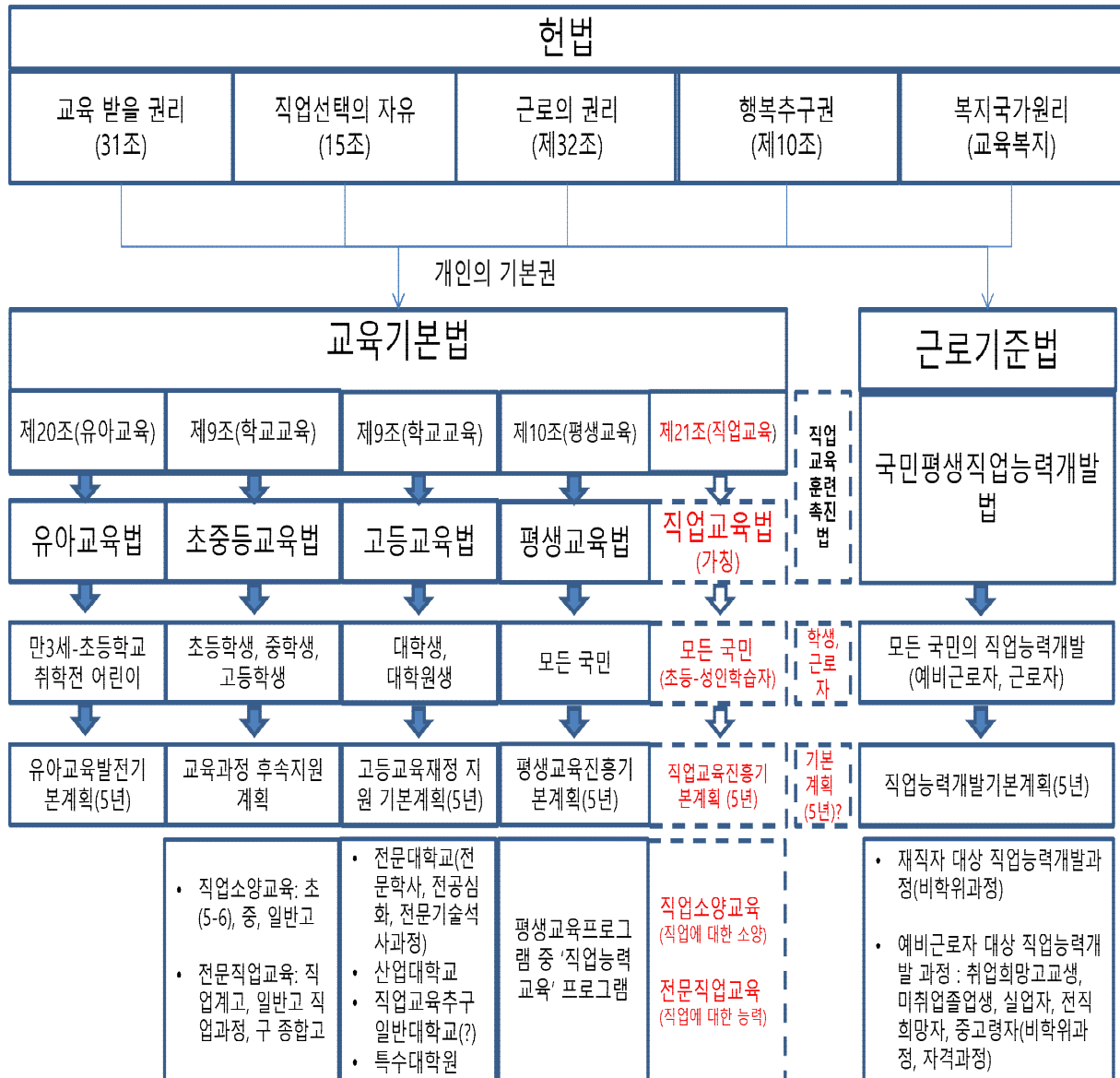
교육부는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이 관련 법령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직업교육의 큰 틀에서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진흥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업교육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93

④시효제도, ⑤수수료, ⑥포상금, ⑦행정조사, ⑧청문과 공청회, ⑨행정기관 간 협조·행정응원, ⑩행정기관 등의 보고의무, ⑪권한의 위임·위탁, ⑫대리·대행, ⑬동일·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⑭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이 있다.”

참고 1. 직업교육법 제정(안) 법령 및 기본계획 등 개념도



참고 2. 해외 직업교육법 입법례(대만, 독일)

□ 대만: 기술직업교육법

제1장: 일반 원칙

이 법은 기술 및 직업 교육(TVE)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며,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법의 주관 기관이며, 각 산업별 관련 기관이 해당 분야의 직업 교육을 담당한다.

제2장: 기술 및 직업 교육의 계획 및 관리

정부는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맞춰 기술 및 직업 교육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정기적으로 직업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산업 및 취업 수요를 고려해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 정부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제3장: 기술 및 직업 교육의 시행

제1절: 직업 준비 교육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직업 탐색 및 가치 형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중학교는 기술 및 직업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직업 준비 교육

-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산업과 협력하여 직업 교육을 설계하고, 직업 윤리 및 관련 법률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 직업학교 및 대학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 산업 전문가가 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우수한 인턴십 운영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3절: 직업 계속 교육

- 직업 계속 교육은 기존 직장인과 전직 희망자를 위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 학교 및 직업 훈련 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실습 및 직장 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직업 계속 교육 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정부는 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제4장: 기술 및 직업 교육의 교사 자격

- 직업 교육 교사는 필수적으로 직업 교육 및 진로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산업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연구 및 기술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산업체에서 연구나 연수를 수행해야 한다.

부칙

- 기술 및 직업 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교육 장비 기부, 실습 기회 제공 등)에 대해 보상이 주어진다.
- 법의 시행 세부 사항은 교육부가 정하며,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 독일: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BBIG) 주요 내용 요약

1. 일반 조항

제1조: 직업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며, 직업 교육 준비, 초급 교육, 추가 교육, 재교육을 포함한다.

제2조: 직업 교육은 기업, 직업 학교 및 기타 직업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짐을 명시한다.

제3조: 본 법의 적용 범위를 정의하며, 고등교육 기관 및 공공 서비스 교육과 같은 일부 예외 사항을 규정한다.

2. 직업 교육

초급 직업 교육

제4~9조: 직업 교육 직종의 인정 및 규제, 기존 교육 경력 인정, 교육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규정

제10~12조: 직업 교육 계약과 그 법적 보호, 무효 계약 방지 조항.

제13~16조: 훈련생(교육생)과 교육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적절한 지도와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함.

제17~19조: 직업 교육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조건 및 지속적 지급 규정.

제20~23조: 수습 기간(견습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및 조기 종료 시 보상 규정.

제24~26조: 훈련 완료 후 고용 관련 추가 조항 및 계약 규정.

훈련 환경

제27~28조: 훈련 장소 및 훈련 시설의 적합성 기준을 정의.

제29~31조: 훈련 교사의 개인적, 기술적 자격 요건을 규정

제32~33조: 품질 관리 및 부적합한 교육 제공자의 금지를 명시.

시험 및 평가

제34~50조: 시험 규정, 평가 기준, 응시 자격 요건 및 자격 인증의 동등성 인정.

3. 추가 교육 및 재교육

제53~57조: 추가 교육 과정의 규제, 시험 기준 및 외국 자격 인정 규정.

제58~63조: 재교육 요건, 시험 절차 및 자격 인증 기준.

4. 특수 계층을 위한 직업 교육

제64~67조: 장애인을 위한 직업 교육 규정.

제68~70조: 학습 장애 또는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교육 준비 과정.

5. 직업 교육 조직

제71~75조: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기관을 정의.

제76~80조: 직업 교육 위원회의 설립 및 역할을 규정.

6. 연구, 계획 및 통계

제84~88조: 직업 교육 연구, 계획, 보고 및 데이터 수집의 목표와 절차를 규정.

7. 독일 연방 직업 교육 및 훈련 연구소(BIBB)

제89~101조: 연방 직업 교육 및 훈련 연구소(BIBB,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의 구조, 재정 및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

8. 벌칙 및 최종 조항

제102~105조: 법 위반 시 벌칙, 기존 법률과의 연속성, 독일 통일 이후의 법 적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